보도자료

보도일시[지면보도] 2021년 11월 18일 (목) 조간부터
[인터넷 기사] 2021년 11월 17일 (수) 12:00이후 가능[연구관련]
김향아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
(044-287-6026, hyang@kli.re.kr)단 당 자신현구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 평가기획팀장
(044-287-6407, shin@kli.re.kr)김기웅 한국노동연구원 홍보전략팀
(044-287-6571, kiwoong913@kli.re.kr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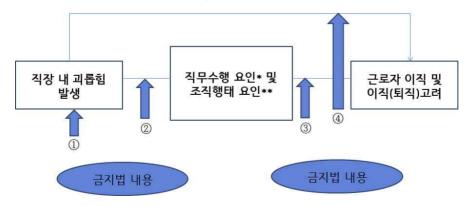
2021년 11월 17일 (수) 09:00

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근로자의 고용변동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

배포일시

□ 본 연구는 지난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도입이 개인의 고용상태 변동 및 조직의 인사관리 측면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를 [그림 1]과 같이 살펴보고, 실태조사와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에서의 괴롭힘 근절 및 감소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모색하였음.

[그림1]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고용연계성



- 주) * 직무수행요인: 일에 대한 만족과 동기, 직무동기, 직무만족, 직무몰입 등
 - ** 조직행태 요인: 근로자의 소진, 조직만족, 조직신뢰, 조직몰입
 - *** 본 연구는 로짓 및 경로분석을 통해 ②, ③, ④의 영향을 확인함.
 - 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감소
 - ② 괴롭힘 발생 후 근로자 소진 및 직무만족 등의 요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감소
 - ③ 직무수행 및 조직행태 요인이 이직으로 연결되는 관계에 영향
 - ④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이직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의 변화

1.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주요내용

-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(제76조의2)
 -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임.
-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'괴롭힘 예방', '사내 구제 절차', '피해자 구제', '책임 부과'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.
 - 여러 내용 중 취업규칙에 의한 예방 및 조치 의무화1)(괴롭힘 예방)와 신고권 보장 및 즉시 조사 의무2)(사내 구제 절차)가 괴롭힘 발생에 대한 기업 대응과 관련된 사항이며, 이 부분을 중심으로 금지법의 고용 효과를 확인하였음.

2. 직장 내 괴롭힘 경험 후 근로자의 고용상태변동 및 변동의사 변화

- 괴롭힘 경험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
 - 괴롭힘 피해 경험자들은 과거 고용상태의 변동을 경험했거나 향후 고용 변동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 - · 현 직장에서 괴롭힘을 경험한 근로자 비율은 38%, 이 중 경력을 단절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사람 29%, 이직하고 싶은 근로자 37%임. 두 수치 합산하면 비자발적 고용변동 가능성 있는 피해자는 10명 중 7명에 이름.
 - · 과거 직장에서 괴롭힘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근로자는 전체의 62%, 이 중 실제로 경력단절(노동시장 이탈)발생 근로자는 18%, 타 직장 이직자는 53%임. 두 수치 합산하면 과거 직장의 괴롭힘 피해로 고용변동 발생 집단의 비율은 피해경험자 10명 중 7명꼴임.
 - => 〈표 1〉과 같이 현재와 과거직장 피해 경험자 각각의 고용변동비율은 약 70%에 가까운 수치로 고용변동 가능성은 높은 수준임.

¹⁾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

²⁾ 근로기준법 제76의3

〈표 1〉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근로자의 고용변동 및 의사에 미치는 영향

구분	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 (A)	경력단절* (B)	경력단절 비율 (B/A*100)	이직 및 이직의사** (C)	이직 및 이직의사 비율(C/A*100)	고용변동 (B+C)	고용변동 비율 (B+C)/A*100
전체	1,503명	330명	22.0%	693명	46.1%	1,023명	68.1%
현재 직장	575명	168명	29.2%	214명	37.2%	382명	66.4%
과거 직장	928명	162명	17.5%	479명	51.6%	641명	69.1%

^{*} 경력단절: 과거직장은 노동시장 이탈, 현재직장은 일 자체를 당분간 쉬고 싶다는 의사임.

3.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인한 고용변동 방지효과

- 직장 내 괴롭힘 피해 후 경력단절 및 이직 경험했거나 이직의사 있는 근로자들은 사업장의 적절한 조치로 경력단절 및 이직의사 변경 가능성 높음. 금지법과 관련한 세부 조치별 효과는 〈표 2〉와 같음.
-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나타난 것은 '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예방'(현 직장: 74.9%, 전 직장: 70.8%), '피해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및 보상'(현 직장: 74.1%, 전 직장: 72.9%)등의 피해자 구제로 나타남.

〈표 2〉 사업장 조치별 근로자 고용변동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

(단위; %)

	구분	현재 직장 고용변동의사 1)	과거 직장 고용변동의사2)
1)신고절차 마련, 신고접근	①비밀 보장되는 신고 절차 마련	66.2	63.8
성 강화	②사업장 내 직장 괴롭힘 방지 규정 의무화	68.1	67.2
2)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	③사내 괴롭힘 신고 접수 시 사용자의 피해사례조사 의무화	69.9	66.5
사 강화	④법령 상 괴롭힘 행위 신고 시 국가기관의 직권조사	68.8	65.5
3)행위자 엄중 처벌	위자 엄중 처벌 ⑤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		71.0
사파레지 나를 미 TIOI7k링	⑥피해자에 대한 외부 상담 서비스 제공	66.5	64.4
	⑦피해자에 대한 각종 법률·소송 지원	70.2	65.8
4)피해자 보호 및 지원강화	⑧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	74.9	70.8
	⑨피해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 인정 및 보상	74.1	72.9
5)사용자 등의 의무와 책임	⑩괴롭힘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	66.0	65.1
확대	⑪사용자의 행위자 징계 등 필요조치 이행 의무화	74.9	71.8
6)예방교육 강화 및 인프라	⑫사업장에 대한 괴롭힘 관련 컨설팅 서비스 제공	67.3	67.1
구축	⑬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	67.8	67.1

주 : 1) 고용변동의사: 해당 조치로 인해 경력단절 및 이직 의사에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인원/ 현재 직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경험 후 경력단절 및 이직의사 응답자 382명×100.

^{**} 이직 및 이직의사: 과거직장은 이직경험, 현재직장은 이직의사를 의미함.

²⁾ 고용변동의사: 해당 조치로 인해 경력단절 및 이직 의사에 변동이 있었을 것이라고 응답한 인원/과거 직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경험 후 경력단절 및 이직의사 응답자 641명×100.

4. 괴롭힘 발생 시 사업장 대응조치 유무에 따른 고용변동의사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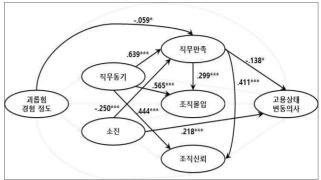
- 사업장 조치 유·무별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에서 **특별한 조치가 없었던 경우**는 괴롭힘의 경험정도가 많고 소진이 높아질수록 경력단절, 이직 가능성이 높아짐. 반면 피해 경험 근로자의 직무만족과 조직신뢰의 정도가 높으면 고용상태 변동의사는 낮아지게 되어 고용 유지 가능성이 높아짐.
- **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업장 대응 조치가 있는 경우**, 괴롭힘 정도가 이직 등 고용상태 변동의사에 주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았음. **소진과 직무만족만이**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.
 - =>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.
- 금지법에 따른 고용상태 변동의사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
 - 분석대상은 현재 직장 피해경험자로 한정함.
 - 직장 내 괴롭힘이 고용상태 변동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, 괴롭힘 경험은 직무동기 등 5가지 매개변수*를 통해 고용상태 변동의사에 직·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.
 - * 직무동기, 소진(burn-out), 직무만족, 조직몰입, 조직신뢰
- 괴롭힘 발생 후 <u>사업장 조치가 없는 경우</u>, 괴롭힘 정도가 높아지면 소진이 증가하여 경력단절이나 이직을 할 가능성이 높아짐.
 - · 간접영향의 경우, 괴롭힘 경험정도↑→ 직무동기↓ → 직무만족↓ → 고용상태 변동의사↑, 괴롭힘 경험정도↑ → 소진↑ → 조직신뢰↓
 → 고용상태 변동의사↑의 경로를 보임.
- 괴롭힘 발생 후 <u>사업장의 조치가 있는 경우</u>, 괴롭힘 정도가 갖는 직접 경로는 사라지고 간접적 경로도 약화됨. 즉, **피해 근로자의 고용상태 유지**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.
- 결과적으로, 괴롭힘에 대한 조치는 괴롭힘에 따른 경력단절이나 이직에 대한 의사를 변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음.

[그림 2] 사업장 대응 조치 유무

(<u>조치 없음</u>)

.022** 직무만족 직무동기 .355*** - 043* .385*** 괴롭힘 경험 정도 고용상태 변동의사 조직목인 -.265** ,263*** .107*** 소진 088*** -.071 조직신뢰

(조치 있음)



주) *p<.10, **p<.05, ***p<.0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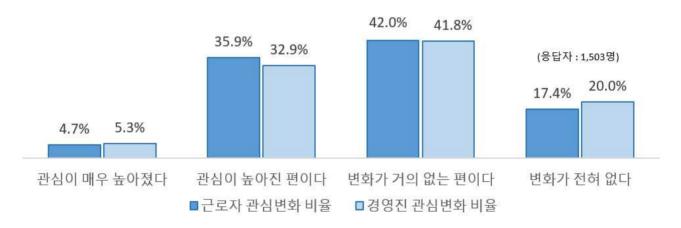
5.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대응

- 금지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
 -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제화에 따른 법 시행은 1년여(조사시점 기준: 2020년 9월)밖에 되지 않았지만, 경영진과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졌으며,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상호존중의 직장문화를 형성에 기여하고 있음.
 -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, 법에서 정한 의무 이행을 위해 기업이 가용한 자원의 범위 내에서 기업 특성과 문화를 반영한 사내규정을 규범화하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 사업장의 자율적 대응이 촉진됨.
 -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대책과 법이 없었다면, 사내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거치지 못한 채 피해근로자의 이직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, 금지법에 따른 사내 프로세스가 구축되어 기업에 계속 머물 수 있는 유인이 작동됨.
 -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고 조직 내 신뢰, 존중 문화가 형성 및 정착된다면 조직구성원들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이 높아지면서 이직률도 감소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음.
-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관심변화
 -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기업의 제도와 대응 방식에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.
 - 설문조사 결과, 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인사제도 변화에

대해 응답자의 81.2%가 변화가 있다는 응답을 하였음.

- 근로자의 괴롭힘 관심 변화는 응답자의 40.6%, 경영진의 관심 변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9.2%가 관심 변화가 있다고 응답함.
- 금지법 시행 이후, 기업은 가용한 자원의 범위 내에서 기업 특성과 문화를 반영한 사내규정을 규범화하고 있음. 이러한 현상은 기업별로 자율적인 분쟁해결 시스템을 설계하고 그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해결하도록 하는 입법의도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임.

[그림 3] 금지법 시행 이후 근로자/경영진의 관심 변화 여부



6.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적 제언

- 명확하고 용이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수단 마련
 - 사업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이 어려워 괴롭힘 신고 시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.
 - 다양한 사례를 통해 괴롭힘에 해당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사례집을 제공 하거나 전문가를 포함한 별도의 판단 지원 장치 마련이 필요함.
-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사업 실시
 -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인사, 교육 업무를 부서별로 분장하지 못하거나 1인이 괴롭힘 관련 업무를 모두 맡는 경우가 다수임.
 - 이에 소규모 사업장 대상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방안 마련 등에 대해 정부 컨설팅 사업이 필요함.
-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교육의 활성화
 - 다수의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예방 및 대응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교재 개발, 교육기법 개발 등의 실효성 있는 정책 필요성 제기
 - 사전 예방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교육 의무화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며,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함.
- 직장 내 괴롭힘 및 금지법에 대한 적극적 홍보
 - 정책대상인 일반인들이 접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매체와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대
- 고용상 괴롭힘 금지의 범위 확대
 -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을 5인 미만 모든 사업장까지 대상 확대
 -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이를 금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존엄성 보장 및 인격권 보호
 - * 모든 사업장에서는 괴롭힘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 강조 필요